

(통권 22-4호)

# 예산·재정정책 정보

본 보고서는 충청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l : 635-5205)

2022. 5.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페이지
I. 경제	1. 충남경제-월간 충남경제4월호	1
II. 재정	2. 디지털세 도입 논의 동향과 지방세 시사점	3
	3. 지방재정 개혁과제	6
	4. 탄소중립에 따른 발전 부문 에너지세제의 중장기 세수 전망과 시사점	12
	5.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15
III. 정책	6. COVID-19 감염병 확산사태에 대응한 조세정책 동향 및 평가	19
	7. '사회참여소득' 제도의 개념과 현실 적용방안	22
	8. 국책 공모사업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24
IV. 법률 제·개정	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특례시 사무이양, 재정	25

## 1. 충남경제-월간 충남경제4월호

- **(경기 종합)** 산업생산 및 제조업 부문의 판매전력량 증가, 신규 구인인원 증가 등 전반적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 지역의 경기를 견인하던 중간재 수출과 내수소비 감소로 현재 경기는 전월대비 소폭 하락
  - 러-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이로 인한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가속화, 금리 인상 등 경기 하방 요인이 예기되고 있는 상황
- **(기업 경기)** 제조업 경기는 수출, 내수판매, 매출, 가동률 등의 부문에서 뚜렷한 호전세를 보이고 있으나,
  - 전반적인 업황, 채산성, 인력사정, 원자재가격 등의 부문에서 어려움이 지속되며 경기 악화를 판단하는 기업이 대다수 비제조업 경기 역시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파가 더해지며 위축상태가 더욱 심화된 모습
- **(산업 생산)** 전자부품, 1차금속 제조업 등 도내 핵심 산업의 빠른 회복과 견조한 생산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전기차 생산 설비 공사 영향이 잔존해 있으나, 최근 생산이 재개됨에 따라 향후 추이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전자부품 제조업의 경우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 완화, 생산 및 출하 증가 추세 등이 지속되며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 그 외 1차 금속, 화학 제품 제조업 역시 원활한 흐름으로 도내

산업생산을 뒷받침 하고 있는 모습

- **(수출입)** 3월 충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32.1% 증가한 106억 8,900만 불로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시 100억 달러 규모를 돌파. 무역 수지 역시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흑자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전국 1위)
  - 다만 러-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주요도시 봉쇄조치 등으로 인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대외거래 부문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 **(고용)** 도내 고용시장은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고용률 등 주요 지표 증가추세가 지속되며 뚜렷한 개선세가 시현되고 있는 모습
  - 다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 영향으로 자영업자,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고용 취약계층·업종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산물 출하량 증가, 축산물 공급여건 개선 등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석유류와 개인서비스 등의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 봄철 온화해진 날씨와 거리두기 완화 등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 확대, 인플레이션 우려, 확진자 증가 예상,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전망) 경기는 심각한 상태로 위축

출처 : 충남연구원(2022.4)

## 2. 디지털세 도입 논의 동향과 지방세 시사점

### - 데이터세 도입 논의를 포함하여 -

-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원시데이터(Raw Data) 발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원시데이터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함으로써 데이터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함.
  - 기업들이 데이터 거래 또는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막대한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세제도가 없어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데이터 거래에 대한 과세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자원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실제 데이터 산업의 규모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음.
  - 데이터 거래 내지 활용에 대한 과세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사업 모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데이터 거래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데이터 거래 내지 활용은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식별하더라도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연결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거래 내지 활용에 대한 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단기적·일방적 과세제도에 더하여 2023년 도입될 예정인 디지털세의 모델로서 기능할 OECD 디지털세 합의안의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제시하였음.
  - 해외에서 논의되었던 단기적·일방적 과세제도의 타당성 논의는 디지털세에 흡수될 예정임.

-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제도 폐지와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데이터세 도입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
- 해외의 단기적·일방적 과세제도들은 국제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 무역분쟁·조세조약과의 부정합성·이중과세 문제 등 도입 및 운영 가능성에 있어 실효성이 적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데이터세와 같은 일방적인 과세제도의 한계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데이터의 거래 내지 활용을 과세대상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디지털 사업 모델의 구조적 특성 및 디지털세 도입으로 인해 데이터세 도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데이터세 도입 논의는 실효성이 없어졌음.
- **(정책 방향 제언)** 필라1(Pillar1)에 국한한 논의로서 디지털세 도입 시 법인세법상 과세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된다면, 법인세 과세표준의 증가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 필라1에 대응하는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 결과, 우리나라에 시장소재지국으로서 과세권이 배분될 것이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동일한 금액이므로 증가 전망
- 다만 이는 시장소재지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과세권이 배분되는 부분만 고려한 것이며, 거주지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음.
- 우리나라 전체 관점에서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 해당함.

- 이러한 디지털세 증가분에 대해서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지방세 확대 방안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분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선결되어야 함.
  - 우리나라에 배분된 과세권 총량은 필라1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고정된 값이므로, 국세와 지방세 사이의 상호합의 없이 지방세 분을 일방적으로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법을 선택한 결과 고정된 값을 초과하면 안됨.
-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분의 확대와 별개로, **지역 간 배분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필요(세 가지 방향)
- 법인세법에 개정될 납세지 규정 체계를 따라가는 방향
  - 디지털세 세수입에 한하여 별도의 지역 간 배분
  - 공동세원으로 운영하면서 지방재정 상황에 맞춰 배분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2021.12)

### 3. 지방재정 개혁과제

- 4개 추진전략으로 지방재정 자립, 지역균형발전지원, 공평과세 구현, 지역경제활성화 조세수단 확보를 수립하고, 20대 개혁과제를 도출함.
  - **(지방재정 자립)** 국세 이양을 통한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 보조사업 지방이양·정비,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지방환경세 도입,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담배소비세 확대, 로봇세 등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 **(지역균형발전지원)** 지방교부세 재원보장 기능 강화, 재정연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기금신설, 분석·진단을 통한 재정형평화 재설계, 지역위기 대응을 위한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공동사업 활성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 중과세제도 실효성 확보
  - **(공평과세 구현)** 토지용도별 과도한 세부담 격차 완화, 부동산 상속·증여 취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주거용 부동산 과표 불형평 해소, 전기·수소차 확대에 따른 자동차세 재설계
  - **(지역경제활성화 조세수단 확보)** 지역경제 활력에 적합한 지방소비세 재설계, 양도소득세 일부 이양을 통한 지역맞춤형 부동산세제 운영, 부동산 과표결정권 강화, 지방세 탄력세율 및 임의세 활성화,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

#### ○ 지방재정 자립 개혁과제

(개혁과제 1) 국세 이양을 통한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 전체 소득·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대비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비중을 각각 10%p 확대
- 지방소득세 확대 과정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방식, 재정형평화 기능을 담당하는 기금출연 등 지역 간 세수격차를 줄이는 장치를 마련함(지역 간 세수격차 완화 장치 마련)

#### **(개혁과제 2)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정비**

-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과 일정한 원칙 아래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기능분담 등의 개편 시도함(이양대상 및 보조율 정비).
- 국고보조사업과의 중복성, 지방재정 부담 가중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해 대규모(예, 1000억원 이상) 공모사업 축소를 위해
- 균특회계 관련 각 계정을 정비하고, 균형발전 관련 사업으로 재구성하며, 거버넌스를 재검토.

#### **(개혁과제 3)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지방환경세 도입**

- 환경 관련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가 주요한 집행 주체가 되는 부담금은 행정의 일원화와 효율화를 위해 지방환경세로 재편
- 유가보조금을 포함한 자동차세 주행분을 지방환경세 탄소분으로 재편, 기존 유가보조금 부분은 중앙정부 재원으로 지급

#### **(개혁과제 4)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담배소비세 확대**

- 재원의 대부분이 이미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형태로 지방으로 이전되고 있는 담배분 개별소비세를 담배소비세와 통합
- 국제기준에 걸맞은 담배세제 구조 선진화 차원에서 부담금을 담배소비세와 통합함

#### **(개혁과제 5) 로봇세 등 신세원 발굴**

- 일자리감소, 세수 부족 등의 부정적 영향의 완화를 위해 로봇 보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
- 태양광·풍력 설비는 재산으로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발전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 (개혁과제 6)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통합하여 한도 내에서 관리
- 일몰제의 의무적 폐지를 규정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규 감면 절차 방식으로 타당성을 검토함
- 일몰기간 없이 항구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중에서 감면 성격의 세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 지역균형발전지원

#### (개혁과제 7) 지방교부세 재원보장 기능 강화

-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국세 비율 인상 혹은 조정률 최저선(예, 90%)을 설정
- 정책기능 차원에서 수행되는 보정수요액(지역균형수요 등) 비중을 낮춤으로서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기능은 신설되는 지역균형발전기금에서 담당

#### (개혁과제 8) 재정연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기금 신설

-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장치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도입

#### (개혁과제 9) 분석·진단을 통한 재정형평화 재설계

- 지방재정 형평화 제도에 대한 종합 분석·평가를 위한 ‘지방재정 형평화 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주기(3~5년)로 재정형평화를 진단·평가 한 후 관련 제도를 재설계

**(개혁과제 10) 지역위기 대응을 위한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공동사업 활성화**

- 지방소멸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사업 특별회계를 도입하여 지자체와 교육청 간 공동협력사업 발굴
- 교육재정 재원조달 구조 등에 있어 학령인구 수, 학교 수 등 지역적 편차 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방식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을 교육수요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함(교육재정 유연성 확대).

**(개혁과제 11)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 중과세제도 실효성 확보**

- 승계취득 포함, 중과세율 인상 등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완화 내용을 원래대로 복원하고, 지역적 중과세 문턱효과의 방지를 위해 일반과세가 이뤄지는 성장관리권역을 2배 중과세함
- 34개 중과세 제외업종을 폐지, 보완·유지 등으로 구분 관리함(대도시내 법인 신설·전입 중과세 제외업종 축소).

**○ 공평과세 구현**

**(개혁과제 12) 토지용도별 과도한 세부담 격차 완화**

- 토지 과세대상 구분에 따른 세부담 격차 및 주택과의 세부담 불형평 완화를 위해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축소
- 용도 구분없이 일정 규모(예, 100억원) 이상 토지를 보유한 개인

에게 종합부동산에서 합산과세 검토

**(개혁과제 13) 부동산 상속·증여 취득에 대한 과세 강화**

- 시가 과세인 국세와 달리 지방세에서 상속·증여의 과표는 시가의 60~80% 수준인 시가표준액으로, 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완화를 위해 과표를 현실화함(상속·증여 취득에 대한 과표 현실화).
- 부동산 상속·증여 취득과 관련하여 주택정책 수단으로 취득세를 활용(세율 인상 등)함(상속·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개혁과제 14) 비주거용 부동산 과표 불형평 해소**

-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과 마찬가지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함(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시행).

**(개혁과제 15) 전기·수소차 확대에 따른 자동차세 재설계**

- 단기적으로 자동차세 소유분의 현행 틀을 유지하되 비영업용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기준
-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세 소유분을 환경세 지향적(교정과세 방식)으로 부과하는 혼합방식으로 전환

**○ 지역경제활성화 조세수단 확보**

**(개혁과제 16) 지역경제 활력에 적합한 지방소비세 재설계**

-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를 소비지수 기준으로 일원화함(소비지수 기준 지방소비세로 일원화).

**(개혁과제 17) 양도소득세 일부 이양을 통한 지역맞춤형 부동산세제 운영**

-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현행 10% 수준에서 확대(예: 30~50%) 하면서 세율체계 등 과세체계를 개편
-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편익원칙에 충실하도록 물건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물적과세로 전환

#### **(개혁과제 18) 부동산 과표결정권 강화**

- 지방분권 강화와 부동산공시법 결정권한 내용에 적합하게 ‘중앙 집권형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지방분권형으로 전환
- 중앙정부는 전국적 차원에서 통일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설정한 기준 내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

#### **(개혁과제 19) 지방세 탄력세율 및 임의세 활성화**

- 조세경쟁 가능성이 낮은 세율 인상 등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제한요건을 완화함(탄력세율 제한요건 완화).
-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세대상에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임의세 등)을 모색함(임의세 등 활성화).

#### **(개혁과제 20)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

- 자율적 지방세 지출 정책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단으로 감면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한 자율적인 감면을 결정권을 자치단체에 부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면의 위배성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상에서 보완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2021.12)

#### 4. 탄소중립에 따른 발전 부문 에너지세제의 중장기 세수 전망과 시사점

- 본 연구는 발전부문 제세부담금에 대하여 기존의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하는 방법 대신 15년 치 전력수요 및 발전량 전망 자료를 활용하여 장기수입을 추계하였음
- **(분석 결과)** 발전 부문의 제세부담금 세수입을 추계한 결과, 온실가스감축 수준에 따라 발전원별 제세부담금 수입액 변화가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을 확인함
  - 온실가스감축을 강화할수록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금 수입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특히 국세(개별소비세)에서 가장 현저한 세수 감소로 귀결되었음
- 또한 원자력은 추가 설비 없이 현재 설비도 서서히 퇴출할 계획이다 보니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와 부담금, 기금 등의 수입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 석탄발전을 가장 많이 억제하는 시나리오는 BAU 대비 15년간 제세부담금 총수입추계액이 약5조 5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3천7백억원 가량의 세수감소를 의미함
- 현행 제세부담금 제도상 단위 발전량 당 유연탄의 부담률이 17.8원/kWh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원자력(8.1원/kWh), LNG(2.56원/kWh), 수력(2.29원/kWh)의 순으로 따르고 있음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 부문의 전략(탄소중립 및 탈원전)은 제세부담금 수입을 갈수록 축소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됨
  -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대비 2030년 제세부담금 총수입이 시나리오별로 많게는 26.5%, 적게는 16.9% 감소

- 제세부담금 중에는 국세의 감소율이 -18.9~-32.4%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 지방세(-7.4~-9.9%)와 부담금 및 기금(-8.9~-11.3%)의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2030년에는 제세부담금에서 이 두 부분의 수입 비중이 오히려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연료별로 보았을 때는 2020년 대비 2030년에 유연탄에서 발생하는 제세부담금 수입이 8,958~14,434억 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NG의 제세부담금 수입은 동 기간에 264~1,342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됨
- **(정책적 함의)** 정책대안은 그 자체로 별도의 연구주제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나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에 대한 최종소비세 등을 중장기적 대안
    - 전력에 대한 최종소비세는 전원에 무관하게 전력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세수입이 예상되며, 전력화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을 고려한다면 수요를 일부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정책대안임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 달리 전력의 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결정 구조에서는 최종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움
    - 전기요금의 결정구조가 시장의 여건이 시시각각 반영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전력에 대한 최종소비세의 실질적인 의미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발전 부문의 제세부담금 제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담률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에너지세의 교정적 기능을 감안한다면 환경 피해 비용이 가장 많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진 석탄 화력발전에 대해 가장 높은 제세 부담금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적절한 정책 방향임

- 다만 이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강화할수록 발전 부문의 제세부담금은 감소하게 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전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재생 에너지에는 각종 보조금으로 인한 재정지출 규모가 상당함
- 정부는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 운용을 위하여 에너지 분야의 조세와 재정정책 모두에 대해 지속가능성 차원의 정책대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송부문도 친환경차 보급정책으로 기존 휘발유·경유·자동차용 부탄으로부터 확보되는 제세부담금 수입은 갈수록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친환경차 보급 지원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 에너지세제의 가장 큰 두 개의 부문인 수송부문과 발전 부문 모두 현행 제도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수지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우리 사회의 고령화 및 복지의 강조 등으로 의무지출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재량지출도 확대되고 있어 에너지 분야에서까지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은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출처 :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1호(2022.3.)

## 5.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 코로나19 위기로 현 사회안전망의 포괄성 및 위기 대응성의 한계가 드러난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
  - 특히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의 경우 고용 소득 충격에 대한 반응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연령층을 포괄하여 지원하려면 실업부조, 근로장려금 강화 필요
  
- (정책제언) 고령층 지원: 노인빈곤 대응 지원의 충분성 확보
  - 소득지원 이후 빈곤 정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고령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충분성이 우선적으로 확보 필요
  - 기초연금으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으나, 빈곤 정도에 비해 지원수준이 낮아 소득지원 후에도 빈곤의 정도가 심각
  -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함으로써 공적연금의 포괄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나, 현재의 고령 빈곤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의 강화 역시 필요
  - 고령층에 대한 소득지원제도의 개선은 결국 재정 투입의 수준에 대한 합의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간 조합에 대한 논의 요구
  - 다만, 노인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관련 재정부담이 향후 커질 수 있음을 고려. 특히 노인인구의 70%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기초연금의 경우 제도적 변화 없이도 고령화 추이에 따라 재정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노인빈곤 해소에 보다 집중한 고령층 지원 설계가 필요

○ **(정책제언) 근로연령층 지원: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 강화**

-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는 경제적 상황 악화 시 지원하는 경기 대응성을 강화 필요.
-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보장정책 대안들을 비교해 보면, 우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제도 재편방안은 근로빈곤층을 다시금 충분히 포괄하지 못할 우려
- 일정 소득을 무기한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하에서는 수급대상 선정 시 소득과 재산을 엄격하게 고려하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 위기 시 소득이 감소하나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진 근로빈곤층은 수혜대상에서 제외.
- 다음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의 경우 적정 수준의 소득을 지원하려면 재정 부담.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수준을 낮춘다면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으로서 불충분
- 현 소득지원체계를 유지한 채 낮은 수준의 지원액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지원체계의 경기대응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의 강화 필요**

- 우선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취업취약계층의 구직 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 근로연령층 소득지원체계에서 가장 부족한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
- 제한된 구직기간 동안 소득지원을 제공하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보다 넓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빈곤층 포괄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
- 다만, 한국형 실업부조로 2021년에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시행 초기단계로 지원 수준 및 기간이 불충분해 경제적 상황

- 악화에 대응하는 실제적인 지원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제한적
-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의 가구구성에 대한 고려 없이 월 50만원 지급. 이는 개인 대상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수준으로는 적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구직자에게는 불충분
  - 다만, 지원금액의 증가는 실업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 필요.
- 또한 6개월로 제한된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기간도 취업취약계층의 구직 및 재취업 활동을 위한 생계지원 기간으로 충분한지에 대해 검토 필요
- 이러한 한계에 대응하여 미성년자 자녀를 둔 구직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과, 제한된 횟수 내에서 수급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필요
  - 또한 공공부조와 비교하여 재산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가구재산 중 비중이 높은 주택의 최근 가격 급등 및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여 근로연령층의 포괄 범위를 넓히는 방향의 제도 확대가 필요
  - 이와 함께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극적 복지와의 차별점을 분명히 할 필요
- 두 번째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는 지원은 여전히 일을 하나 빈곤한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도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주기 축소와 재산 기준 확대를 고려할 필요
- 일을 하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또는 이전 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 1~2회 지급되기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대응한 지원으로서 한계

- 최근 월 단위로 소득정보 파악 주기를 단축하는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맞추어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를 최소 분기 이하로 축소함으로써 근로장려금의 경기대응적 역할을 보강 필요
- 영국의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는 근로장려금과 유사하게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포함하는데, 짧은 소득파악 주기를 기반으로 월 단위로 지급.
- 또한 일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포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의 재산 기준을 확대할 필요.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기준은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총재산 2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재산이 1.4억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의 50%가 지급. 재산 기준은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총재산기준이기에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재산을 과대 평가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근로빈곤층을 포괄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
- **마지막으로**, 근로연령층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소득 지원뿐 아니라 주거, 교육, 돌봄 등 이들의 필수적인 욕구에 대응한 관련 현물 및 사회서비스 지원이 함께 이뤄질 필요
- 특히 근로연령 빈곤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돌봄지원 강화는 근로연령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도울 뿐 아니라 불평등 확대에 대응한 선제적 사회안전망으로서도 중요

출처 : KDI(2022.4)

## 6. COVID - 19 감염병 확산사태에 대응한 조세정책 동향 및 평가

- 123개국의 국가들이 발표한 조세지원 정책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COVID - 19 감염증 상황에서 시행한 조세지원 정책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주로 사용한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그 정책 수단이 최초로 집행된 시기는 언제였는지를 검토함
  - 현재 COVID - 19 감염증 사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추가로 시행될 조세지원 정책과 사후관리 방안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주요 조세지원 정책사례 및 시사점) 첫째, 직접적인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적 추가지원이 필요함**
  - 국가별 봉쇄정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종으로 관광 및 항공 관련 업종이 대표적임. 호주, 벨기에, 프랑스,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중국, 포르투갈 및 스위스는 항공업, 숙박업 및 유통 업종에 대하여 세 부담 감면이나 재정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둘째, 기업의 고용 및 투자 촉진 중심의 조세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
  - 호주의 감가상각자산 가속상각, 포르투갈의 미취업자 교육훈련 기관 조세감면 및 면세조치 및 체코, 노르웨이 및 미국 등 7개국의 결손금 이월공제 및 소급 공제 확대 조치 등 기업의 적극적인 고용이나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함
  -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의 고용 및 투자 촉진 중심 세제 조치의 적극성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조세 전문가들의 견해도 우리나라의 경우 COVID - 19의

대응 정책으로 기업의 고용 및 투자 촉진 관련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 조세 전문가들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고용 창출 및 유지, 기업 투자 촉진 및 유동성 지원 등에 조세정책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 이러한 해외 사례의 추세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해볼 때 COVID - 19에 대한 조세정책 관련 대응 방안으로서 경제회복이나 경제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 물론, 수출 제조업종 중심의 대기업은 COVID - 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기 때문에 기업 지원보다는 개인 및 소상공인 위주의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나,
- 중소기업의 경우 COVID - 19의 피해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한 점 때문에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기업 고용 및 투자 촉진에 대한 지원이 결국 개인에 대한 간접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기업의 고용 및 투자 촉진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셋째, 과도한 재정부담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고려가 요구

- 즉 COVID - 19로 인한 재정 확대가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원 투명성과 과세 기반 확대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 COVID - 19로 인해 향후 국가 경제의 둔화로 인한 세입이 감소하고 세출은 증가하여 재정수지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감면 및 유동성 효과의 크기는 OECD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으나 전 세계의 평균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고, 조세 전문가들이 재정부담 국가부채증가에 우려를 나타내었으며, 재정부담을 고려한 효율적 조세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간이과세자 범위 및 면세점 확대와 같은 COVID - 19 대응 정책은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세원 투명성이나 과세 기반 확대 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포함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해외 각국의 의료분야 종사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감면, 의료장비의 가속상각,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 수입품에 대한 소비세 면세조치 등의 정책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병 대응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4개국의 의료분야 종사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감면조치, 폴란드와 중국의 의료장비 등의 가속상각, 오스트리아 등 14개국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 수입품에 대한 소비세 면세조치 그리고 오스트리아 등 9개국의 기부장려를 위한 세제 조치는 COVID - 19 방역 일선에서 종사하고있는 산업이나 인력에 대한 조치임

출처 : 세무와 회계 저널 (2022.2.)

## 7. '사회참여소득' 제도의 개념과 현실 적용방안

-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고용 형태의 다변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기본소득, 음의소득세(NIT)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관심
  - 사회참여소득 역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모델 중 하나로서, 소득보장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 기대되는 제도
  
- '사회참여소득'(이하 참여소득)은 1996년 경제학자인 앤서니 앳킨슨(Anthony Atkinson)에 의해 기본소득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치적으로 보다 실현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제안
  - 참여소득은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 여기에서 참여는 임금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더 넓은 개념인 '사회공헌'을 의미
  - 적용사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임금 보조금 지급, 사회적 일자리 정책(노인과 중, 장년층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대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돌봄수당(양육수당, 장기요양 가족 요양비)
  
- (앞으로의 발전 방향) 노인 인력 활용과 소득보장
  - 베이비 붐 세대를 비롯한 고령 세대가 은퇴 이후에도 사회활동을 하며 공동체에 이바지하고, 동료시민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참여소득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필요
  
- 노동 개념의 확장과 가치 있는 일의 보상

- 가정 내에서의 돌봄노동, 가사노동과 같이 보이지 않는 노동 (invisible work), 사회적 가치는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노동(unpaid work)에 대한 보상 가능
- **(결어)** 활발하게 진행되는 미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논쟁 속에서, 참여소득은 아직은 생소한 개념. 하지만 이미 부분적으로 그 개념이 적용된 사례도 있으며, **중, 장년, 노년 세대를 중심으로 소득보장과 사회적 참여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효과
  - 보상이 적절히 지급된다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한 마중물과 같은 역할. 기본소득, 안심소득 등 급진적 제도 변화가 필요하고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시도해볼 수 있는 대안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22.4)

## 8. 국책 공모사업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 국책 공모사업은 중앙정부에 대한 과도한 재정의존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 제도의 한 형태임
- 그러나 국책 공모사업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첫째,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 규모가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
  - 둘째, 지역 인프라와 재정력 차이로 인해 공모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셋째, 불규칙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
- 따라서, 국책 공모사업의 선정기준, 사업규모 및 수, 선정기관의 특성 등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국책 공모사업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 첫째, 합리적 수준의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 있음
  - 둘째, 지역 균형을 고려한 공모사업의 평가항목을 개선할 필요 있음
  - 셋째, 공모사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있음
  -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 선정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 마련 필요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4)

## 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자치분권위원회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기로 심의 의결한 권한과 사무 6건을 이양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제198조제2항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된 명칭인 특례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특례시’로 변경(안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1항·제3항 및 제43조제3항).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특례시’로 변경함.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추가 이양하는 6건의 사무특례를 규정(안 제41조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항만법」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과 관련된 사무특례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로 추가하여 규정(이하 생략)

출처 :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일자 2022.4.4.)